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68호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신규 자문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전담기관”)은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컨설팅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할 신규 자문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2026. 12. 9. 18시까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소개

○ **(추진목적)**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성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성과 제고

○ **(사 업 명)**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환경기업

○ **(지원한도)** 기업 당 연간 1,200만 원(VAT 포함)

○ **(주요내용)** 신청기업의 자문 요청사항에 대해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시장진출 전략 수립, 관세.통관.환급, 환경규제 등의 컨설팅 제공

자문기업단	법무법인(1개사)	관세법인(8개사)	전문컨설팅사(9개사)
자문범위	①해외시장 개척 ②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③해외투자·금융 ④통관·관세·환급 ⑤해외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 세부 자문범위는 ‘별첨1’ 자료 참조

○ **(지원절차)** 전담기관의 자문 배정 이후 자문기업의 자문 수행 및 완료 보고, 신청기업의 만족도 조사, 전담기관의 대금 지급 순으로 진행

자문 신청	→	**승인 및 자문 기업 배정**	→	**자문계획 승인**	→	**자문 수행**	→	**자문 완료 및 만족도 조사**
신청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자문기업		자문기업↔ 신청기업		자문/신청기업 → 전담기관

2 모집 계획

○ **(대상사업)**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 **(활동기간)** 자문기업단 등재일부터 2년('27. 1. ~ '28. 12.)

※ 등재 후 2년마다 갱신평가를 통해 활동 연장 가능

○ **(활동내용)** 전담기관이 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기 5개 자문범위 중 가능한 영역의 자문을 수행

○ **(모집대상)** 상기 사업에서 자문기업으로 활동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또는 기관

구분	자격 요건	모집규모
공통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개시 후 3년이 경과하고 사업소재지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기업 또는 기관 - 자문기업단 배제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또는 기관(기존 등재 이력있는 자문기업만 해당)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	-
법무법인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0사
전문컨설팅사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녹색산업 및 수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개인사업자는 불가)	

* 세부 내역은 '별첨2' 자료 참조

○ **(선정방법)** 대면 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하고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별첨3' 자료 참조

3 주요 일정

자문기업 응모	→	접수 및 평가	→	결과 통보	→	위촉 및 교육	→	자문 수행
신청자→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신청자		전담기관→ 선정자		선정자

○ **(신청접수)** 신규 자문기업 지원 신청 및 접수(~ '26. 12. 9.)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대면 발표평가(~ '26. 12. 24.)

○ **(결과통보)** 선정결과(가부) 통보(~ '26. 12. 31.)

○ **(위촉교육)** 선정자를 대상으로 자문기업 위촉 및 교육(~ '27. 1. 31.)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별첨3' 자료 참조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한)** 2026. 12. 9.(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전자우편(consulting@keiti.re.kr) 발송

※ (전자우편 제목)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신규 자문기업 지원

◦ **(문 의 처)** 기술원 해외사업실(☎ 032-540-2190, 2194)

◦ **(제출서류)** ①대면평가용 발표자료(형식 자유), ②자문기업 신규 지원 신청서(첨부양식 1),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개인), ⑤관련 분야 신청 자격 증빙서류(법무법인만 해당, 별첨4 참조), ⑥신청기관 개요(첨부양식 2), ⑦참여인력 총괄표 및 이력사항(첨부양식 3, 4), ⑧최근 2년간 컨설팅 실적(첨부양식 5), ⑨확약서(첨부양식 6), ⑩정보 비공개 동의서(첨부양식 7), ⑪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첨부양식 8), ⑫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

◦ **(결과발표)** 2026. 12. 31. 이내

붙임 1. 세부 자문범위(별첨1)
2. 자문기업단 배제 대상(별첨2)
3. 평가항목 및 배점(별첨3)
4. 자문기업 신청자격(별첨4)
5. 자문기업 신규 지원 신청서(첨부양식 1)
6. 신청기관 개요(첨부양식 2)
7. 참여인력 총괄표 및 이력사항(첨부양식 3, 4)
8. 최근 2년간 컨설팅 실적(첨부양식 5)
9. 확약서(첨부양식 6)
10. 정보 비공개 동의서(첨부양식 7)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첨부양식 8)

[별첨1] 세부 자문범위

자문신청 분야	세부 자문내용(고려사항)
공통 사항	1) 수출 및 해외 수주 관련 요청 사항에 한해 자문 진행이 가능 2) 수출 대상국의 시장, 바이어·경쟁사 리스트, 법률 및 정책 조사 및 분석 등 자문을 위한 사전활동에 해당하는 과업은 중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중복 서비스: 본 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동일 국가의 유사 분야 또는 유사 제품군을 자문한 경우 해당 다만, 기존 대비 신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중복 서비스라도 견적금액을 최대한 인정 ** 신규 바이어, 협력사 네트워크를 구축(상담지원 내역, mou 체결 등)하거나, 규격인증, FTA 관련 또는 AEO 인증 취득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확보한 경우
1) 해외시장 개척	- (전략수립) 해외진출 전략 및 추진일정 수립(해외진출 전략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전략 이행단계에서 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 (바이어 발굴/상담)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및 업무협의 지원 - (시장조사·분석) 해외시장 현황, 경쟁제품 및 기업 실태 조사·분석 - (대체시장 발굴)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 기타 시장개척 지원 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단순 정보조사는 신청불가 2) (자문기업) 자문결과물이 승인*된 경우는 사전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정보조사 및 분석 활동 또한 자문비 신청 가능 * 해외진출 대상의 현지 진입을 위한 전략, 필요 활동, 일정 수립 등에 관한 결과물과 근거 제시 필요
2)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 수출·수주·AGENT·비밀유지·대금회수·분쟁 등에 관한 문서 작성 및 검토 지원 <주의사항> 1) (신청기업) 잠재 바이어와 수출·수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인보이스 및 계약서 작성초안(또는 상대방의 초안에 관한 검토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결과물에 근거한 자문비 신청 가능 3) (자문기업) 계약서 검토 결과 또는 수정본 작성 시, 원본 대비 수정 사항 명기 요망
3) 해외투자·금융	- (기술이전) 해외로의 기술이전 추진 전략 수립 및 거래 모델 설계, 계약 조건협상·체결 자문 등 - (해외투자) 진출 대상국의 법률(세법, 인력고용,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등) 검토를 통한 법인설립 등 해외투자 전략 수립 및 실무 절차 지원 - (외환금융) 외환 및 무역·수출금융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추진 전략 수립, 금융상품 신청 절차 지원

자문신청 분야	세부 자문내용(고려사항)
	<주의사항> 1) (신청기업)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가능성 또는 필요성, '해외투자'는 해외투자를 고려하는 명확한 근거(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제휴 문의 등)가 있거나 '외환금융'은 수출·수주를 위한 각종 금융 신청을 결과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무역금융 신청시 수출계약서 필요). 공통적으로 단순 정보 조사는 신청 불가 2)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기술이전'은 '계약조건 수립, 협상이력'이, '해외투자'는 '해외투자 전략*'이. '외환금융'은 '해당 금융상품 신청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자문비 신청 가능 * 신청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에 의거한 세부 자문의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 사전 정보조사 및 분석 활동 또한 자문비 신청 가능
4) 통관·관세·환급	- 대상제품의 수출 통관 및 상대국에 대한 현지 수입 통관*, 관세환급** 업무 지원 * 품목 분류 및 원산지 판정 등(예) 미국 CBP Binding Ruling 등 사전판정 신청) **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업무 - FTA, RCEP 등 국가 간 무역협정 대응 업무* 지원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 수출자 취득 및 갱신, 사후검증 등 관리 - AEO 등 국제무역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 신청 및 심사, 사후관리 등 업무 지원 - 물류 분야(위험물 포장, 포장 비용 절감 등) 업무 지원 - 결제(L/C, T/T 등), 무역보험 등 수출입 거래 업무 및 조건 검토 지원 - 미국, 중국 등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분석 및 해결 전략 검토 - 사전 검토(통관·관세·환급 업무 전반의 적용 가능성·효과 분석 등) 자문 - 기타 수출·수주계약 활동에 근거한 수출·수주 지원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대상제품에 대한 수출·수주계약서 사본 또는 해외 바이어의 샘플 주문이나 주문을 전제로 한 사전문의 등 해당 업무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2) (신청기업) 단순 정보조사·교육 신청은 불가 3) (신청기업) 수출입 관세, 포장 및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 수출견적서에 포함되는 직접비는 지원 불가 4) (자문기업) 각 업무별 수출 계약 인코텀즈(incoterms), 검증·심사 주체 등에 따라 제출 결과물의 범위를 전담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물에 근거해 자문비용 신청 가능
5)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 대상제품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업무 자문, 서류 작성 등 지원 - 수출대상국 또는 국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탄소·화학물질 관련 규제 시행·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대상제품 또는 공정의 규제 적합성·준수여부 진단 및 대응전략 수립 - 규제 대응을 위한 신고·보고·검증 등 절차 준비 지원

자문신청 분야	세부 자문내용(고려사항)
	- 온실가스 감축 및 ESG 대응 지원 - 기타 환경규제 이슈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자문 요청사항이 수출과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신청기업) 단순 정보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불가, 이미 취득한 인증 및 규제 대응 관련 기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신청기업) 인증 취득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비·인증비·검사비 등 직접 비용은 지원 불가 4)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해외 규격인증·시험분석서' 또는 '규제 적용성 검토자료, 제출 서류 작성 및 검토 결과본, 규제 대응 로드맵(또는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결과물에 근거한 자문비 신청 가능 ※ 인증 관련 견적금액 산정 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붙임2]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준용 요망

[별첨2] 자문기업단 배제 대상 -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제2항

제23조(자문기업단 등재 및 배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 제22조에 따라 등재된 자문기업단 목록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신청기업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자문비용의 환수조치나 자문기업단에서 배제를 결정할 수 있고, 자문기업단에서 배제된 자문기업은 이후 3년간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1. 자문기업이 자문수행 결과 및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불성실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시일 내 미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2회 이상 업무 관련 경고를 통보받은 경우
2. 자문기업이 본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과실로 전담기관 또는 대상기업에 중대한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자문기업이 자문한 대상기업의 만족도 조사 시 당해연도에 “불만족(60점 미만)”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자문기업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자문활동계획과 다르게 자문을 수행한 경우
5. 자문기업의 불성실한 자문수행 및 기타 사유로 자문이 중단된 경우
6. 자문기업이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문을 수행하고 자문비용을 수령한 경우
7. 자문기업이 자문수행 전후로 수출·수주 실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한 경우
8. 자문기업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이와 유사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9. 자문기업이 자문기업단 등재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자문배정 거부 또는 전담기관 주관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10. 자문기업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갱신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갱신된 경우
11.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첨3]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제안사 일반현황 (20)	조직, 특장점	- 제안사 연혁 및 조직현황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10
	보유 네트워크	- 제안사의 내외부 활용전문가 등 관련 네트워크 보유 및 활용 가능성	10
전문성 (50)	컨설팅 비용산정	- 컨설팅 비용산정 표준 보유여부 및 적절성	20
	업무추진 프로세스	- 컨설팅 프로세스 표준 보유여부 및 우수성 - 우수 컨설팅 사례 및 재현 가능성	20
	전담 인력	-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10
환경산업 및 수출업무 이해도 (20)	환경산업 이해도	- 제안사의 환경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10
	수출·수주 업무 이해도	- 수출·수주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10
사업관리 (10)	관리 능력	- 컨설팅 시 애로사항 대응 사례	10
합 계			100

[별첨4] 자문기업 신청 자격

구분	자격 요건	
전문법인	법무법인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법률사무소·합동법률사무소 등
	관세법인	관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법인·관세사사무소·합동관세사무소 등
	전문컨설팅사 등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녹색산업 및 수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첨부양식 1]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자문기업 신규 지원 신 청 서”

법 인 명(기업)

<목 차>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o 기관의 연혁 및 조직현황
- o 기관의 특장점
- o 내외부 활용 전문가 등 관련 네트워크 보유 현황 및 활용 가능성

2) 전문성
- o 기관이 보유한 표준 컨설팅 비용 산정 방식
- o 기관이 보유한 표준 컨설팅 프로세스
- o 우수 컨설팅 사례 및 재현 가능성
- o 전담 인력 운영 계획 및 이력

3) 환경산업 및 수출 업무 이해도
- o 기관의 환경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 o 기관의 수출·수주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주요 실적

4) 사업관리
- o 컨설팅 수행 시 애로사항 대응 사례 등 관리능력

※ 목차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양식 2]

신청기관 개요

(신청일자 : 202 . . .)

<table>
<tr><td colspan="2">기 관 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d>대표자 E-mail</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지원 분야</td><td colspan="2">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 中 택1</td><td>홈페이지</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소</td><td>본사</td><td colspan="3">(-)</td><td>전화</td><td></td></tr>
<tr><td>지점
(해당 시)</td><td colspan="3">(-)</td><td>전화</td><td></td></tr>
<tr><td colspan="2">설 립 일</td><td></td><td>인력수</td><td>명</td><td>자산총액</td><td>백만원</td></tr>
<tr><td colspan="2" rowspan="2">담당자</td><td>성명</td><td>부서/직위</td><td>전화번호</td><td>E-mail</td><td></td></tr>
<tr><td></td><td></td><td></td><td>신용등급
(전년도)</td><td></td></tr>
<tr><td colspan="2">매출액
(전년도)</td><td colspan="2">백만원</td><td>수출액
(전년도)</td><td colspan="2">간접수출액 포함 백만원</td></tr>
<tr><td colspan="2">강점 분야
(해당 시 체크)</td><td colspan="5">☐ 해외시장개척(진출 전략수립 및 바이어 발굴 등) ☐ 통관·관세·환급
☐ FTA 활용 ☐ 물류·포장 ☐ 법률·계약서 검토
☐ 해외투자·법인 설립 ☐ 기술이전 ☐ 외환·무역금융
☐ 온라인 마케팅 ☐ 해외 규격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강점 권역 및 국가 : ( )
※ 해외시장개척 분야 선택 시 반드시 작성</td></tr>
</table>

[첨부양식 3]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컨설팅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 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양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첨부양식 5]

최근 2년간 컨설팅 실적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 (최대 5건 이내) 바랍니다.**
(실적증빙 및 위 양식 비고란에 일련번호 ① ~ ⑤를 기재해 주세요.)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바랍니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바랍니다.

[첨부양식 6]

확 약 서

사 업 명 :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위 사업의 자문기업 갱신 또는 신규 모집 평가에 신청한 당 업체는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선정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귀 원의 자문기업 선정 방식 및 지원신청서 내용과 본 선정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자문기업단 등재 시 귀 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업무수행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양식 7]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양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의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자문기업단 등재”의 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환기원이 수행하는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자문기업 자문기업단 등재” 접수에 따른 제반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 참여 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자문기업단 등재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